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117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 또는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실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 수행토록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7807호, 2020. 12. 29. 공포, 2021. 7. 1. 시행)됨에 따라, 위탁기관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해당 국가에 허가·등록 등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서식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부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시 해외제조업소의 해당 수출국의 식품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 나.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 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 최초 등록한 자만 할 수 있어, 최초 등록과 마찬가지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 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 다.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실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토록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기관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라. 해외제조업소 및 제품명 등이 동일한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등을 “동일사·동일식품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최초정밀검사와 유사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수입식품도 “동일사·동일식품등”으로 구분하여 검사방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10)
- 마.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16)
- 바. 수입하는 축산물은 수입신고 시 수출국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첨부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양 국가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총리령 제1253호>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 자가 그 등록을 갱신하려면”을 “갱신하려는 자는”으로 한다.

1.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현지실사 등의”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지실사 또는 위생평가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지실사 등을”을 “현지실사 또는 위생평가 등을”로 한다.

제29조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29조 또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 중 “매월”을 “매분기”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 본문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각각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무작위표본검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조·가공장)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제조·가공장)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무작위표본검사”로 하며,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무작위표본검사”로 한다.

별표 16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200	250	300
1의2.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50	100	150

총리령 제1253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되,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되는 축산물을 수입신고할 때부터는 수출 위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2. 별표 8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별표 16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Ⅱ.개별기준 제2호라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22일 이후 선적된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

[] **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y**

[] **변경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Updating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y**

[] **등록갱신신청서 Application for Renewing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y**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Check the applicable brackets

(인터넷으로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Business of online purchasing of imported food, etc by proxy is excluded from registration)

(앞쪽 Front page)

접수번호 Receipt number	접수일자 Date of receip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처리기간 Processing time 3일 3 days
등록코드(변경등록 또는 등록갱신인 경우) Registration code (For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or renewal of registration)		

신청인 Applicant Information	<p>[]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a foreign food facility</p> <p>[] 수입자 Importer</p> <p>※ 수입자인 경우 아래 사항을 작성 If "Importer", provide the below information</p> <p>■ 업소명 Company name () ■ 영업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p> <p>■ 소재지 Address () ■ 전자우편주소 E-mail address ()</p> <p>■ 전화번호 Phone number ()</p>
------------------------------	--

등록유형 Type of Registration	<p>[] 최초등록 Initial registration</p> <p>[] 변경등록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p> <p>[] 등록갱신 Renewal of registration</p>
------------------------------	---

업소정보 Facility Information	업소명 Name of facility	대표자 Representative
	소재지 Address	국가 Country
	전화번호 Phone number including area/country code	
	전자우편주소 E-mail	
팩스번호(선택) Fax number including area/country code, <i>Optional</i>		

식품정보 Food Information	생산 품목 Type of food	<p>(「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유형 Types of food set by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pursuant to Articles 7 and 9 of the Food Sanitation Act and Articles 14 and 15 of the Functional Health Foods Act)</p> <p>[] 농산물 Agricultural products</p> <p>[] 가공식품 Processed foods</p> <p>[] 기구·용기·포장 Apparatus, or containers and packages</p> <p>[] 수산물 Fishery products</p> <p>[]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p> <p>[] 건강기능식품 Functional health foods</p>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영업정보 Business Information	영업의 종류 Type of business	<input type="checkbox"/>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Manufacturing/processing food or food additives <input type="checkbox"/> 기구, 용기·포장 제조·가공 Manufacturing/processing apparatus, or containers and packages <input type="checkbox"/> 농산물 포장 Packaging agricultural products <input type="checkbox"/>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Manufacturing/processing functional health foods <input type="checkbox"/> 수산물 제조·가공(선박 및 양식 포함) Manufacturing/processing fishery products (including vessels and aquaculture)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Whether a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applies to the type of food above, If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적용 안함 No <input type="checkbox"/> 적용 Yes ※ 적용하면 그 시스템을 선택 If "Yes", check as applicable or specify the system <input type="checkbox"/> HACCP <input type="checkbox"/> ISO 22000 <input type="checkbox"/> 기타 Other () ※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 Whether to be certified by a certification body <input type="checkbox"/> 없음 No <input type="checkbox"/> 있음 Yes ※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다면 그 정보를 제공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 인증명 Title of certification () ■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 () ■ 인증일 Certification date () ■ 만료일 Expiration date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The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the foreign food facility concerned agrees that if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deems it necessary, he/she may visit and inspect the foreign food facility.

상기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

The applicant certifies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accurate.

※ 수입자인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로 확인 If "Importer", check the below additionally.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위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등록갱신) 신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 The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the foreign food facility concerned has checked and agreed on the above registration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or renewal of registration)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1), 5 (2), or 5 (6)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2 (1), 2 (3) and 2 (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 I hereby apply for registration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or renewal of registration).

년 year 월 month 일 day
(서명 또는 인)

신청인 Applicant

signature or seal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To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Republic of Korea

첨부서류 Documents required for application	1.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2. 별지 제1호외2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 공장 확인 서류를 번역하여 제출 할 경우, 공증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Documents attesting authorization, registration or declaration of a foreign food facility according to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exporting country.(including its address) 2. A confirmation form of registered information of a foreign food facility * All documents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 When submitting translated documents, they should be notarized.
--	--

유의사항 Note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를 등록·변경·갱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됩니다.

If it is determined that a foreign food facility made registration or alteration or renewed its registr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its registration will be revoked according to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처리절차 ProcedureNote



A CONFIRMATION FORM OF REGISTERED INFORMATION
-Agreement form of foreign food facility-

INSTRUCTIONS

- According to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 person who intends to import food, etc. into the Republic of Korea or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a foreign food shall register his/her facility as a foreign food facility with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before he/she files an import declaration.
- The period of validity of registration of a foreign food facility shall be two years from the date of such registration. The registration shall be renewed at least seven days prior to expiration.
- If the registration is found to have fraudulent information or the facility has been registered in an inappropriate way, the registration may be revoked and products from the facility may be refused to be imported to Korea.
- For successful registration, manufacturers shall fill out this form to satisfy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have the agreement of MFDS inspection and thereby inform *importer* of all of the information and the agreement.
- Please mark \checkmark in if applicable.

☞ If you already have the confirmation number for your facility assigned by MFDS, please inform importer.

TYPE OF REGISTRATION Initial registration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Renewal of registration

Facility Registration Number * If update or renewal of registration, provide MFDS Facility Registration Number

FACILITY INFORMATION

• Name of Facility :	• Representative :
• Address : <small>* Please enter the full address of the facility</small>	
• City :	• State :
• Zip Code :	<small>* if applicable, if not, skip to Province/Territory</small>
• Country :	• Contact Name :
• E-mail :	• Fax number :
• Phone number(*include area/country code) :	• Cell phone, <i>Optional</i> :

TYPE OF CATEGORY

<input type="checkbox"/> Agricultural products	<input type="checkbox"/> Processed foods
<input type="checkbox"/> Food additives	<input type="checkbox"/> Apparatus, or containers and packages
<input type="checkbox"/> Fishery products	<input type="checkbox"/> Functional health foods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No Yes ※ If "Yes", check as applicable or specify the system
 HACCP ISO 22000 Other ()

※ Whether to be certified by a certification body No Yes
 ※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itle of certification :	Certification body :
Certification date : MM-DD-YYYY	Expiration date : MM-DD-YYYY

* Application for the food, if applicable.

The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the foreign food facility concerned agrees that if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deems it necessary, he/she may visit and inspect the foreign food facility.

The applicant certifies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accurate.

The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the foreign food facility concerned has checked and agreed on the above registration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or renewal of registration)

Company Name : _____ **Date :** MM-DD-YYYY

Name & Title : _____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mplete and true _____ (Signature) _____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B: 사전신고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 품구분	1: 농·임산물 [] 2: 수산물 [] 3: 축산물 [] 4: 가공식품 [] 5: 식품첨가물 [] 6: 기구 또는 용기·포장 [] 7: 건강기능식품 []	처리기간	식품등·건강기능식품: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3일, 현장검사 5일, 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 18일						

수입신고인 (수입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신고)번호
	주소	

제조 가공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신고)번호
	주소	

수입신고 대행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제품명	한글명	유형 또는 품목
총수량 (단위:)	순중량 kg	과세가격 (단위: US\$)
총항수	항번	화물관리번호
세번부호 (HSK 번호)	용도	B/L번호
		성분·재질 및 제조공정: 제2쪽에 기재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회사명		
[축산물: 해외직업장 (포장처리·가공장)]	주소					
도축장	등록번호			회사명		
[축산물만 해당]	주소					
수출업소				회사명		
	주소					
포장장소	등록번호			주소		
선적일	년	월	일	선적항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국내도착항
검사(반입)장소	보관업 등록번호			상호		(☎ - -)
				성명		
				주소		
반입일	년	월	일			

검사기관	
이력번호(수입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만 해당함)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여부	표시함[], 표시하지 않음[], 해당 없음[]
유기식품등 여부	예[], 아니오[]
영유아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의 해당 여부	예[], 아니오[]
식품조사처리 여부	완제품 조사[], 원료조사[], 해당 없음[]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 여부	예[], 아니오[]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고령친화식품 여부	영양성분 조절 식품[] 경도조절제품[] 점도조절 제품[] 해당없음[]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여부	예[], 아니오[]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 여부	예[], 아니오[]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No.	성분·재질코드	원재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배합비율 (%)	No.	성분·재질코드	원재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배합비율 (%)
1			·	11			·
2			·	12			·
3			·	13			·
4			·	14			·
5			·	15			·
6			·	16			·
7			·	17			·
8			·	18			·
9			·	19			·
10			·	20			·

제조·가공
공정

신고인 제출서류

-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 성적서(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구분유통증명서
 -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 라.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법 제37조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아.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합니다)
- 자. 삭제 <2019. 6. 19.>
- 차.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했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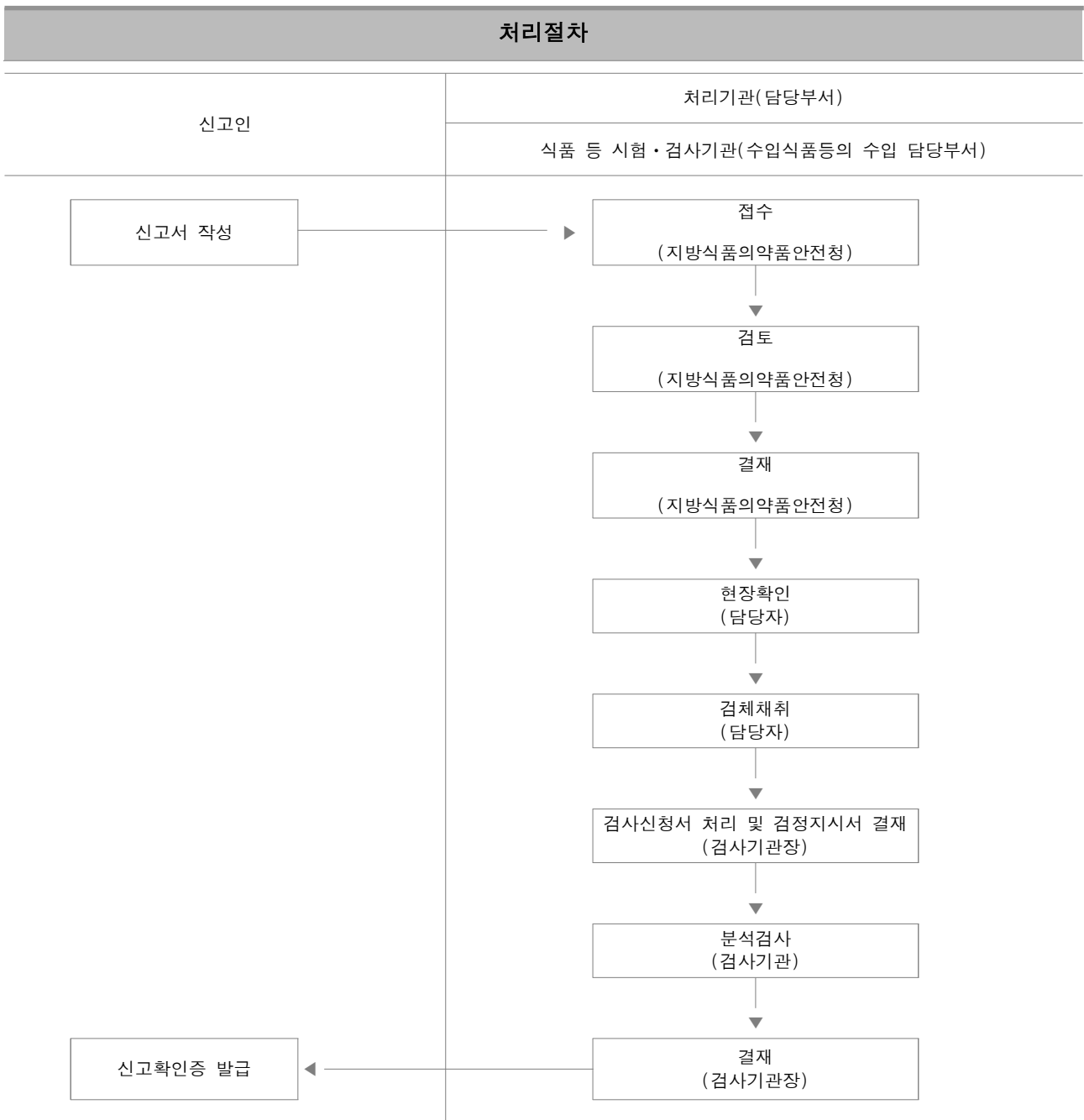
유의사항

-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첨부서류를 이미지파일(PDF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나. 제2쪽 원재료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등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모든 원재료명을 적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 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적어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 등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적습니다.
- 다.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료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릅니다.
- 라.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이 여러 개인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1쪽 "유통기한"란에는 가장 빠른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을 적고, 제3쪽에 모든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별로 각각의 중량, 과세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다만, 축산물 중 식육·원유·식용란은 제외합니다)
- 마. 동일모션으로 동일일할일자에 수입한 동일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축산물·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선하증권(B/L NO)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 바. "수출회사"는 제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회사명 및 소재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포장장소"는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가능한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쪽 및 제3쪽의 유통기한란에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인 제출서류 중 가목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 유형 또는 품목 기재란에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축산물 중 식육·원유·식용란에 대해서는 품목을 기재하고,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 중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은 유형을 기재합니다.
- 자. 동일한 재질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식품과 접촉하는 부위와 그 색상이 다른 경우에도 1건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색상이라도 그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신고 처리상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재용)

품목분류													
검사종류		신고확인증발급방법											
현장 검사	최초일	년	월	일	보완	최초일	년	월	일	사유			
	최종일	년	월	일	요구	최종일	년	월	일	사유			
정밀 검사	검 사 기 관	의뢰일			년	월	일	의뢰내용					
		성적일			년	월	일	성적번호	적합	부적합			
검사결과조치구분													
행정 조치 내용	사유									통 보 일	년	월	일
	사유									통보문서번호			
	세부내용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	년	월	일	수량 (단위 :)			중량 (단위 : kg)		금액 (단위 : US\$)			
	발급 번호												
부적합최종처리결과		일 자	년	월	일	내 용							
처 리 담 당 자		비 고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 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 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 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 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 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 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 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p> <p>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②·③ (생략)</p> <p>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을 갱신하려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서(전</p>	<p>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p> <p>① ----- ----- ----- ----- -----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p> <p>1. <u>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u></p> <p>2. <u>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따른 ----- 갱신하려는 자는 ----- ----- -----</p>

<p>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 -----.</p>
<p>⑤ ~ ⑦ (생략)</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6조(현지실사 등의 결과 보고)</p>	<p>제6조(현지실사 등의 결과 보고)</p>
<p>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외 식품 위생평가기관이 현지실사 등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① 법 제9조제3항-----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지실사 또는 위생평가 등의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현지실사 등을 한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② ----- 현지실사와 위생평가 등을 ----- -----.</p>
<p>제29조(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제4항에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29조(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제9항 ----- ----- ----- -----.</p>
<p>총리령 제125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p>	<p>총리령 제125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p>
<p>제2조(수입신고 시 축산물 수출 위생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규정(축산</p>	<p>제2조(수입신고 시 축산물 수출 위생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p>

물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외의 축산물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이후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하는 수출 위생증명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적용하되,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되는 축산물을 수입신고할 때부터는 수출 위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입식품정책과	
연 락 처	043-719-2162